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1)

김임순*, 이춘원**, 전숙진*, 최원욱*, 한상욱*
 아태환경 · 경영연구원*
 동성엔지니어링**

목 차

머릿말

- 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개념
- 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의의 및 과정
- 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현황
 - 1) 우리나라 사후관리제도의 개요
 - 2) 사후관리 관련법령 및 규정
 - 3) 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 4) 사후환경조사계획 작성방법
- 라.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요
 - 1) 일본
 - 2) 미국
 - 3) 캐나다
 - 4) 기타 국가
 - 5) 외국제도 분석결과
- 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개선방안
 - 1) 개요
 - 2) 사후관리의 부문별 개선방안
 - 3) 사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

맺음말

머릿말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개념, 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의의 및 과정, 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현황, 라.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요, 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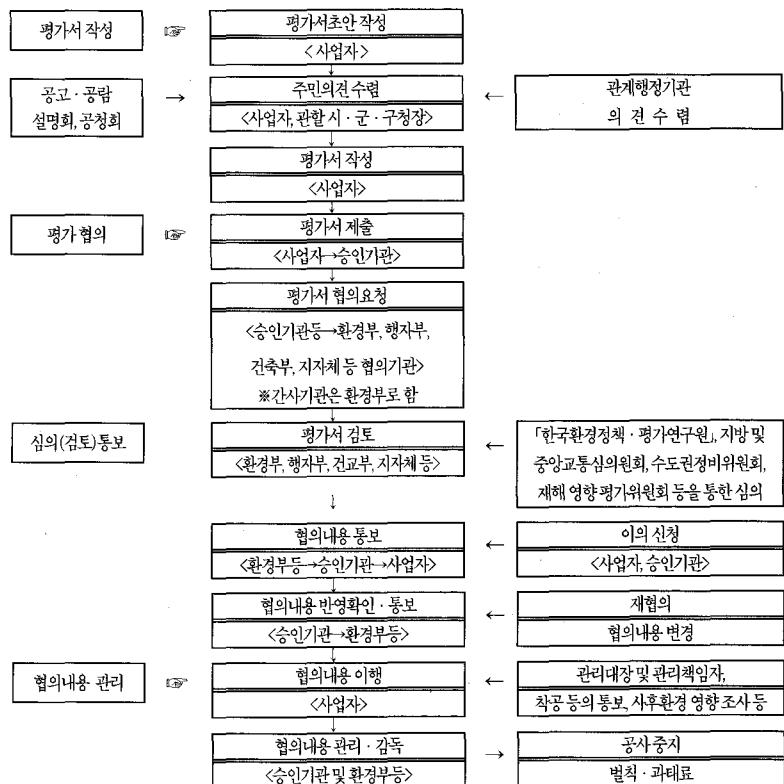
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개념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통합평가법이라 칭함) 제2조(정의)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통합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 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등)에서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할 사업은 도시의 개발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기타 환경에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1조(목적)에서는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전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통합 평가법, 동시행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므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서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검토 및 통보, 협의내용 관리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속에서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과 시설의 이용 및 운영단계에서의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이 허용된 이후 공사단계 및 시설 운영단계에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협의내용의 준수와 관청에 의한 이의 이행감독을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수행절차와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의 사후관리의 절차와 내용 및 관련기관 등을 정리하여



<그림 1> 환경영향평가수행절차 및 사후관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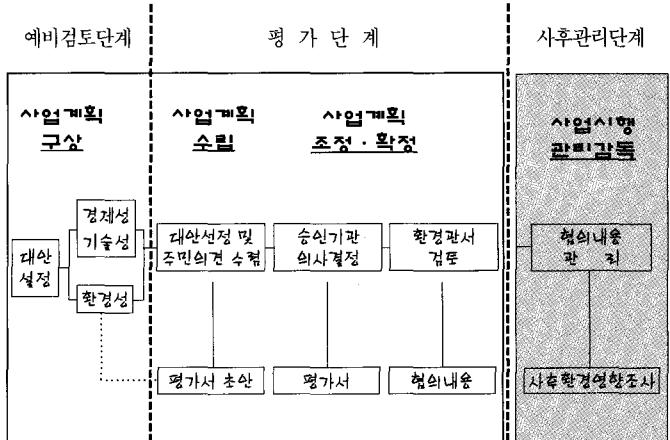
사후관리라는 용어는 영어로 Follow-up 또는 모니터링 (Monitoring), 감사(Auditing), 사후평가(Ex post evaluation)로 표현되는데, 이를 용어는 의사결정과 집행이 후의 조사에 관련된 조화과정으로 감독(Surveillance)과 판단(Judgement)을 함의하고 있다.

원래 모니터링은 주로 생물학과 다른 관련된 환경연구에서 이용되는 개념이고, 감사는 경제학, 경영학 및 회계학 계통의 어간이며, 평가는 기획과 정책과학에서 널리 이용되는 개념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UNEP는 여러가지 지침을 제시하여 왔고 1996년에는 「EIA Training Resource Manual」을 발간한 바, 동 매뉴얼에서는 "모니터링과 감사는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어떤 영향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예측된 범위로 제어될 것인지, 실제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예측치 못했던 영향들이 조절되거나 완화되는지 확인하는 수단이며,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계획의 주기적 검토와 변경을 통하여 사업의 모든 단계에 걸쳐 건전한 실행을 통한 환경보호의 최적화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모니터링과 감사는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수행되어지는가에 대한 활용과정 또한 제공된다."(Monitoring and auditing are used to see what impacts occur; to ensure that the anticipated impacts are maintained within the levels predicted; and to ensure that conditions of approval are adhered to, mitigation measures are effectively applied and the benefits expected from the EIA are achieved as the project proceeds. They can be used to provide information for periodic review and alter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s, optimising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good practice at all stages of the project. Monitoring and auditing can also provide feedback on how the EIA process is working)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실제 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보호행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감사라는 도구가 활용하게 된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시행전 미리 환경보전 측면에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업계획의 구상,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조정·확정, 사업계획의 집행·관리 및 사업시행 관리감독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마무리하는 위치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기본법을 통해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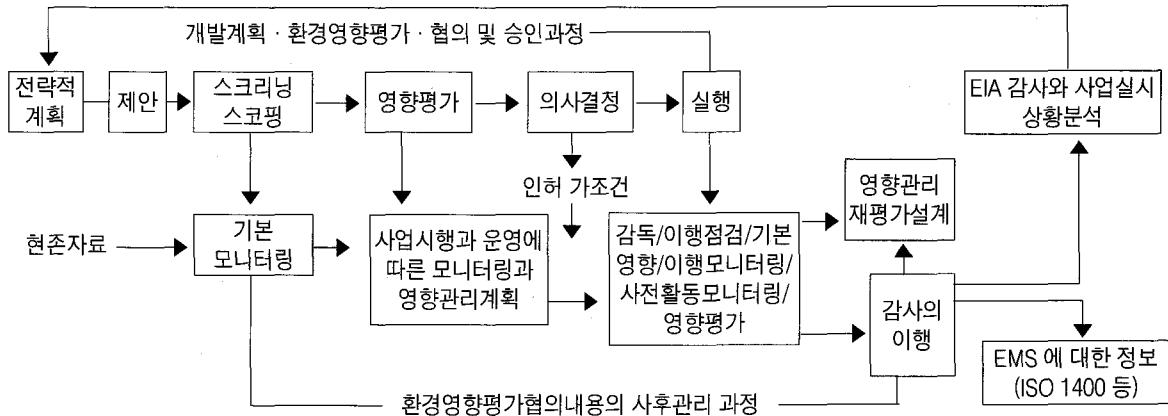
<그림 2> 환경영향평가 추진 단계별 주요검토 및 조치의 기본틀

영향평가 사후관리가 강화된 이후 환경처의 자료에서 자주 인용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현행 통합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의 협의 내용 이행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 개념의 환경관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환경관리는 인간의 의도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지식과 데이터를 기초로 지혜를 짜내는 것과 인간의 노력으로 환경상태를 합목적적으로 제어한다는 의미가 함의(含意)되어 있는 바, 이는 환경 그 자체를 제어하는 것과 환경에 미치는 인간활동을 제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하여는 사회시스템적 접근과 기술시스템적 접근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법률로 아무리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없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시킬 행정제도와 사회적 가치관이 없으면 기술이 사장되게 된다.

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의의 및 과정

우리나라에서 사후관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후



(비고) 기본모니터링, 기본영향은 background data에 의해 파악

<그림 3> EIA의 과정과 모니터링과정(UNEP, 1996)

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과 이의 확인감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이란 명칭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성격은 각 환경영향목 즉 대기, 수질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 방법, 횟수 등을 정하여 사업시행기간 및 운영기간중 환경영향의 발생상태 또는 발생과정을 조사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후 이와 같은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전 예측된 결과와 주기적으로 비교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후의 협의내용의 이행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사후관리는 사후조치, 감독, 이행점검, 모니터링, 영향조사 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이 예측된 대로 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나 영향의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이 필요하고 오차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저감방안 등의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니터링은 크게 구분하면 감지되지 못한 영향의 발생, 예측된 영

향의 양적 질적 변화에 대한 인지와 겸증의 수단으로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 사후관리의 절차를 일반화시켜 볼 때, 사업자가 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의 예측·평가한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서로 문서화하여 환경부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통보, 인·허가승인기관에 의한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의 사업계획에의 반영 및 이의 승인 그리고 이의 이행과 더불어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재평가, 설계에의 반영 그리고 이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을 도모하고자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환경감사가 포함될 수 있다. UNEP는 개발계획의 제안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승인과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후관리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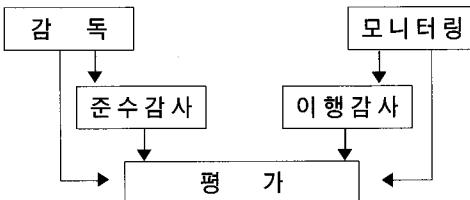
(그림 3 참조)

이상과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환경관서의 입장에서 볼 때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인·허가승인기관의 사업계획 승인내용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사업자가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



부와 아울러 승인기관의 장이 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게 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제거 및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므로서 환경영향평가의 이념을 구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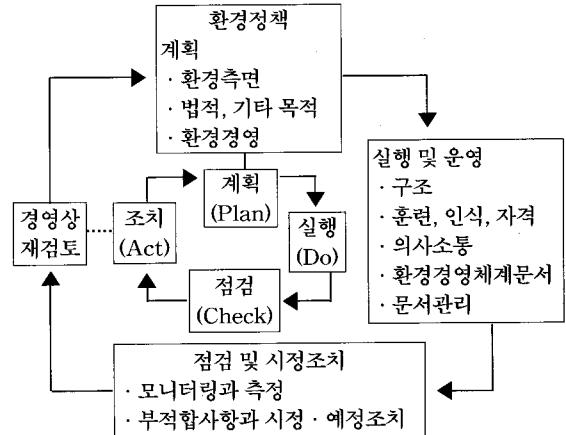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는 예측된 영향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영향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파악하며, 저감수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여기서 모니터링은 예측된 영향과 저감방법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수행시 영향예측의 신뢰도 및 회피·저감방안·보상 등이 효과적인가(Effect Monitoring), 기준 또는 규제에 잘 부합되는가(Compliance Monitoring), 환경을 위



〈그림4〉 사후관리의 일반적인 모형 (Peter Walthern, 1995)

한 운영기준(준거)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Inspection and Surveillance) 등의 세가지 관점에서의 검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는 개발사업자 또는 제3자에 의해서 심사평가된다(그림 4 참조).

감사는 환경영영체계(EMS)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ISO14001에 잘 나타나 있는 바 이는 품질관리분야의 개척자인 W.Edwards Deming에 의해서 고안된 공정관리수단인 Plan-Do-Check-Act의 Deming Cycle에 따라 체계화된 국제규격으로서 Plan은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이고, DO는 계획된 일을 행하는 것이며, Check는 계획된 것에 따라 실제적으로 행하여진 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Act는 점검결과에 따라 초기계획을 변경하고 보완하는 절차이다. 이와 같은 Deming Cycle에 따라 환경영영체계가 구축되고 실행된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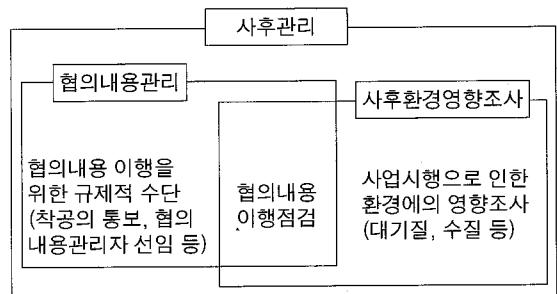
〈그림5〉 환경영영체계의 개념적인 틀

따라서 개발계획·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승인과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후관리과정을 연장선상에서 검토함으로써 사후관리의 합리화방안이 모색되어질 것이다.

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현황

1) 우리나라 사후관리제도의 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후관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발계획 시행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의 수립 등 환경부와 협의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는 규제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후관리는 「협의내용 관리」



〈그림6〉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계



와 「사후환경영향 조사」로 구분되며, 「협의 내용 관리」는 환경부 등 평가서협의기관의 장, 승인기관, 사업자 등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에의 실제적 영향을 조사·확인함으로써 환경영향의 예측·평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게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영향의 발생에 대한 저감수단의 보완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협의내용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환경영향의 예측·평가 결과의 실제 확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6 참조).

2) 사후관리 관련법령 및 규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규정되어 있고 하위규정으로서는 환경

<표 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사후관리 규정 및 주요내용

법령명	관련 규정	주요 내용	비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협의내용 반영 여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 확인 및 조치 -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을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 	
	제22조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관련사항 - 이의신청회신에 대한 사항 	
	제23조 (제협의)	-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에 대한 제협의 범위	
	제24조 (협의내용변경)	- 제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 계획변경등에 대한 저감방안 검토	
	제25조 (사업자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의무 - 관리대장 비치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 -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 착공후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한 의무 - 조사하여야 할 사항의 위임 	
	제26조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기관의 감독의무 - 미이행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승인기관장의 조치 의무 - 미이행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조치 요청권 	
	제27조 (착공통보)	- 사업자가 착공, 준공 및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할 때에는 이에 대한 통보의무	
	제28조 (사전 착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평가의 협의, 재협의, 협의내용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공사금지 	
	제32조 (환경영향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 - 재평가 결과에 의한 조치 - 재평가 기관의 결정 	
	제33조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 영향평가 협의시 협의 완료된 배출농도의 초과에 관련한 부담금 부과 근거	
동시 행정 규칙	제39조 (벌칙)	- 공시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및 재평가 관련 벌금부과	
	제42조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처분기준 -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지정 	
	제22조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기간 - 이의신청에 포함할 내용 	
	제23조 (제협의대상)	- 법에서 정한 재협의 대상사업의 기간 및 범위	
	제24조 (저감방안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내용변경 대상사업의 범위 - 영향저감방안 검토시, 제출서류에 포함될 내용 	
고시	제25조 (협의내용 이행 확인통보)	- 사후환경관리결과 통보 기간 설정	
	제26조 (재평가 결과)	- 법에서 정한 재평가 기간 설정	
	제28조 (초과부담금)	-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대상 및 오염물질의 종류 설정	
	제13조 (관리대장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장의 서식 - 사업자의 관리대장 비치 및 그 기재사항의 기록·유지 의무 	
	제14조 (지정통보)	- 사업자의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통보에 관한 의무	
	제15조 (자격기준)	-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설정	
	제16조 (이행의무승계)	-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 및 제출서류	
	제17조 (착공통보)	- 착공통보 기한설정	

(비고)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에서는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납부통지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

(주) ()는 최종개정일자



영향평가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등이 있다(표 1 참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내용의 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한 제25조 내지 제28조에 주된 내용이 있고, 협의기준 초과부담금과 재평가를 규정한 제32조, 제33조가 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는 제26조에서 환경부장관등 평가서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 제41조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벌금과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에서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대하여 대상오염물질,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착공 등의 통보 서식,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표 2 참조).

사후관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고시 제22조에서 사후영향조사계획 내용 및 기재요령과 조사결과에 대한 작성양식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고시 제28조에서는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승인기관이 협의기관인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또한 동 고시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재협의시 평가서의 내용과 재협의 대상 이외의 사업계획 변경시 포함될 내용, 기간, 제출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22조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사계획의 기재요령,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서식과 이에 대한 통보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타 사업과의 통합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표 3 참조).

3) 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환경현황조사 대상사업별 조사기간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표 3〉 환경영향평가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사후관리 관련 조항 및 내용

관련조항	내용	비고
제22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에 사후환경영향조사 수립내용 포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기재요령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서식 및 통보 절차 - 타사업과의 통합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제28조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기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승인시 협의기관에 승인내용을 통보 - 승인내용 통보기간 및 서식 	
제29조 (재협의시 평가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협의시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제30조 (협의내용변경계획서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협의 대상사업 이외의 사업계획변경시 협의내용변경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 협의내용변경계획서 제출 시기 및 제출 부수 	

〈표 4〉 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내 용	조사기간
<p>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다음사업</p> <p>(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p> <p>(2) 에너지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것.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 이상인 것 ·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것(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이상인 것,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p>(3) 항만건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후 5년까지. 다만, (1)의 경우 공사 완료후에는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에 한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공사완료후 5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에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내 용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과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m²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m²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m²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m² 이상인 것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외과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m²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m²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m²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m² 이상인 것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에서의 준설사업중 준설면적이 10만m²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t 이상인 것. 다만, 항로 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을 제외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외과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m²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m²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m²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m² 이상인 것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후 5년까지. 다만, (1)의 경우 공사완료후에는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에 한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공사완료후 5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4) 수자원개발사업	
(5) 공항의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중 다음 사업(헬리포트는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 한한다) 비행장의 신설 	
(6)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7) 관광단지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8) 특정지역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상기 (1)~(7)에 해당되는 사업 	
(9)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30만m²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m³ 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5만m²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m³ 이상인 것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 까지
2. 상기에 제시된 사업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 까지

4) 사후환경조사계획 작성방법

사후환경조사계획 작성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규정 제2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 ① 조사항목은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 ② 조사항목별 조사내용은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정(환경부령)의 별표2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을 준용하여 선

정하되, 환경기준이 설정된 조사항목에 대하여는 환경기준 항목에 대한 측정계획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환경기준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2) 조사지역 및 조사지점

- ① 조사지역은 평가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되,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



해지역을 포함한다.

② 조사지점은 영향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3)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시점

① 조사시점은 영향예측 결과, 공사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조사항목은 공사착수 시점부터, 운영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 조사항목은 운영개시시점부터 조사한다.

② 조사주기는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 (분기, 반기, 연)

③ 조사기간은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표4와 동일내용임).

(4) 조사방법

① 환경영향평가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정하여진 항목은 동 방법에 의하고, 부득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 조사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5) 기타

① 환경영향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 대책의 이해여부 확인계획

②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 초과시의 조치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대기질, 소음, 수질, 악취(조사대상으로 지정시), 지형·지질(조사대상으로 지정시) 및 동·식물상(조사대상으로 지정시) 등 6개 지표에 대하여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를 정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조사항목별 조사기준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환경기준항목(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항목은 제외 할수 있다)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환경영향평가시 조사 예측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이상
	운영시	"	"	"	"	반기 1회 이상
소음	공사시	"	"	"	소음진동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이상
	운영시	"	"	"	"	반기 1회 이상
수질	공사시	"	"	"	수질오염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이상
	운영시	"	"	"	"	반기 1회 이상
악취 (조사대상으로 지정시)	공사시	악취농도의 순간농도 및 출현빈도	평가서 및 협의서에서 지정된 지역	"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	반기 1회 이상
	운영시	"	"	"	"	연 1회 이상
지형·지질 (조사대상으로 지정시)	공사시	보존가치가 있어 지정된 지형·지질의 형태등	"	"	현지조사	반기 1회 이상
	운영시	"	"	"	"	연 1회 이상
동·식물상 (조사대상으로 지정시)	공사시	보존가치가 있어 지정된 동·식물 서식현황등	"	"	현지조사 및 텁문조사	반기 1회 이상
	운영시	"	"	"	"	연 1회 이상

다음호에 계속...

환경관리 기술전문 교육 수강 접수

환경평가사 자격시험특강 접수

문의 및 접수 : 전국환경관리연합회, (02)852-2291